

가스안전 관리기준(석고붕대사용불가)

가스보일러 시공시 보일러와 배기통과의 접속부에 이전에는 석고붕대를 사용하였지만, 8월 26일부터는 접속부에 반드시 내열실리콘(석고붕대사용불가) 등으로 마감하도록 하는 가스안전관리 기준이 개정되었다.

현행	개정(안)
<p>제6장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제2절 가스보일러설치 제6-2-2조(공통사항) 가스보일러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통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14. (생략)</p> <p><u>〈신설〉</u></p>	<p>제6장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제2절 가스보일러설치 제6-2-2조(공통사항)</p> <hr/> <hr/> <p>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 <p>15. 가스보일러와 배기통과의 접속부는 내열실리콘 등(석고붕대 제외)으로 마감조치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
<p>제 3관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 제9-2-16조(구조) 보일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일반구조</p> <p>가. ~ 아. (생략)</p> <p>자. 보일러의 배기통 접속부의 길이는 20mm이상이고, 바깥지름의 허용공차는 +0, -3mm 이내일 것</p> <p>차. (생략)</p>	<p>제 3관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 제9-2-16조(구조)</p> <p>1. _____</p> <p>가. ~ 아. (생략)</p> <p>자. _____</p> <p>-----40mm</p> <p>-----</p> <p>-----이며, 배기통을 확실하게 접속할 수 있고, 쉽게 이탈되지 않는 구조일 것 차. (현행과 같음)</p> <p>차. (현행과 같음)</p>